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공제 약관

2023. 10.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Chungbuk-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차 례

I. 보통약관	3
II. 특별약관	10
1. 비급여 본인부담금 특별약관	10
2. 질병치료비 특별약관	11
3. 질병사망 위로금 특별약관	12
4. 특정전염병 위로금 특별약관	13
5. 재물손해 특별약관	14

여행자공제 보통약관

제1조 (목적)	<p>이 약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현장학습과 관련한 사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현장학습】 현장학습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그 밖의 숙박형 현장학습과 1일형 현장학습 등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밖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합니다.</p> </div>
제2조 (용어 정의)	<p>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1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학교를 말합니다. 2.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학교 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② 일사병(日射病) ③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④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사고'라 함은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피공제자의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말합니다. 4. '공제회'라 함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를 말합니다. 5. '공제계약자'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12조에서 정한 학교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6. '피공제자'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현장

	<p>학습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학교안전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공제자[학생,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 교원(국공·사립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소속 교원으로 휴직자는 제외하며, 기간제 교사 포함)]를 말합니다.</p> <p>7. '공제금'이라 함은 공제계약시 약정한, 피공제자의 사고접수 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공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p> <p>8. '공제기간'이라 함은 현장학습 당일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에서 현장학습을 위한 출발장소로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시간부터 현장학습 종료(해산을 포함)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 등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p> <p>9.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을 말합니다. (통계청 고시기준)</p> <p>10. '휴대품'이라 함은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로 부피가 휴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의치, 목발, 보조기 등)는 제외합니다.</p> <p>11.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라 함은 보험업법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공제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및 법인에 소속된 직원(보조인 포함)을 말합니다.</p>
<p>제3조 (계약주체의 권리와 의무)</p>	<p>① 공제계약자/피공제자 지위 획득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위의 획득: 공제계약자인 본 약관 제2조의 학교(장)는(은) 공제회에 공제가입을 신청하고 공제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공제회의 승인 시 본 약관에 의한 담보를 제공받기 위한 공제회비 납부의 주체가 되며 동시에 공제계약자를 포함한 그 학교의 교원이 피공제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교육감이 각 학교장을 대신하여 일괄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단, 시·도 교육감이 각 학교(장)를(을) 대신하여 일괄 가입하는 경우에 소속 학교(장)는(은) 피공제자가 됩니다. 2. 해제사유: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아래의 경우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제계약자가 공제를 탈퇴한 때 나.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이 상실되는 때 <p>② 공제계약자·피공제자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p> <p>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평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가 본 약관의 취지에 따라 피공제자의 각종 피해를 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p>

	<p>1.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시행(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 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해야 합니다.</p> <p>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p> <p>손해배상책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본 공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p>
<p>제4조 (계약의 성립)</p>	<p>① 계약은 공제계약자의 가입신청과 공제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p> <p>② 제1항에 규정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시 위임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③ 계약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고 공제회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공제회는 현장학습일 전일 인원으로 확정합니다.</p> <p>④ 제3항에 따라 현장학습 전 가입신청 인원에 대한 공제료를 입금한 경우 공제회는 현장학습 종료 후 인원감소에 따른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p> <p>⑤ 이미 성립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서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계약의 성립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⑥ 계약체결 당시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학교장의 서면 상 요청이 있는 경우 기 납입된 공제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p> <p>⑦ 가입신청 이후 계약사항에 대해서 여행일 전까지는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고, 공제료 납부 이후 여행이 종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p>
<p>제5조 (계약기간)</p>	<p>① 계약기간은 학교장이 현장학습을 허가한 현장학습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로 합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및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공제기간 중 계약종료기간은 현장학습이 종료된 기간을 우선으로 합니다.</p>
<p>제6조 (공제료)</p>	<p>① 공제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공제료는 당해 현장학습 시작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p> <p>② 현장학습일 이후 공제료를 납부한 경우 공제회는 계약의 해제 또는 현장학습 시작일로부터 공제료 납부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p>

<p>제7조 (보상하는 손해)</p>	<p>① 공제회는 본 약관에 의거 각 담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각 담보의 상세 내용은 특별약관에 의하여 정의됩니다. 공제회 사정에 따라 담보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기간의 종료까지 공제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를 제공합니다.</p> <p>② 피공제자가 공제청구 사안이 발생하여 소송 진행 중 퇴직하더라도 그 사안과 관련한 계속적인 청구 건에 대해서는 전학, 자퇴, 퇴학, 휴학, 퇴직 등 신분이 변동되더라도 공제보장이 유효합니다.</p>
<p>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p>	<p>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공제회가 보장하는 공제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p>② 공제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특정 위험활동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 관련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p>③ 공제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전문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 중, 훈련 중, 연습 중 등 운동과 관련된 상해 및 질병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전문운동경기선수】 각종 프로연맹 또는 아마추어경기연맹(협회를 포함)에 소속된 자로 해당 종목의 운동경기에 참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연습 및 전문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p> </div>
<p>제9조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p>	<p>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 등에게 청구 받은 날①(보완서류 요구 없이 최종 서류가 완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금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공제금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서면(문자메세지 포함)또는 유선상 안내하여야 합니다.</p> <p>④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⑤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이 납입하여야 할 공제료 중 미납입부분이 있으면 지급할 공제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미납으로 인한 공제된 공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금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p>
<p>제10조 (소멸시효)</p>	<p>사고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 등이 공제회에 가지는 공제금 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p>

제11조 (사고조사 등)	<p>① 공제회는 공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해당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p> <p>③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및 해당 피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합니다.</p> <p>④ 전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⑤ 제1항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위탁 또는 위촉을 받은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보조인을 포함합니다)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 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p>
제12조 (제3자에 대한 구상)	<p>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 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제회가 대위행사하고, 공제회가 배상함으로써 피공제자가 취득한 권리를 공제회가 당연 취득합니다.</p>
제13조 (부당이득 반환)	<p>학교장, 청구인 및 피공제자는 공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회에 반환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은 경우 2. 요양기관 또는 수리처 등의 거짓 판단에 따라 공제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공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p>공제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세부사항 및 공제금의 분담 내용은 개별 담보의 내용에 따릅니다.</p>
제15조 (개인정보보호)	<p>①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과 관련된 피공제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및 그 지급을 위한 심사(자문을 포함)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학교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아니합니다.</p> <p>②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p>

제16조 (비밀유지업무)	①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으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상대방(공제회, 학교장)의 동의가 있거나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제회와 학교장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분쟁의 조정 및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양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되, 공제회와 공제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여행자공제 특별약관

본 내용에서는 공제회가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하는 담보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며 각 담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의 내용 및 국내법을 따릅니다.

1 비급여 본인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공제회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금액(학교안전법 제36조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하여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 등)을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공제자 중 교직원에 대한 치료비는 의무가입보험(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지급받은 금액(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③ 공제회가 사고로 보상하는 보장기간은 180일 한도로 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비급여항목 중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 비용 ②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③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④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질병치료비 특별약관

<p>제1조 (보상하는 손해)</p>	<p>①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수익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p> <p>② 공제회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보상하는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로 합니다.</p>
<p>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p>	<p>① 비급여 항목 중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 비용</p> <p>②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p> <p>③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p> <p>④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p>
<p>제3조 (준용규정)</p>	<p>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p>

3 질병사망 위로금 특별약관

<p>제1조 (보상하는 손해)</p>	<p>①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p> <p>② 공제회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의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 한합니다.</p>
<p>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p>	<p>①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p> <p>②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p> <p>③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p> <p>④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p>
<p>제3조 (준용규정)</p>	<p>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p>

4 특정전염병 위로금 특별약관

<p>제1조 (보상하는 손해)</p>	<p>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별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p> <p>② 제1항에서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되는 것을 말합니다.</p> <p>③ 제1항에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특정전염병 분류표(【별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p> <p>④ 공제회가 지급하는 특정전염병 위로금의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통상의 잠복기간 제외) 7일 이내 진단 및 치료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합니다.</p> <p>(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통상 또는 평균 잠복기 고시 기준)</p>
<p>제2조 (준용규정)</p>	<p>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p>

5 재물손해 특별약관

<p>제1조 (공제의 범위)</p>	<p>①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휴대하는 피공제자 소유의 재물 파손에 한합니다.</p> <p>② 아래의 물건은 공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 포함) 4. 산악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식물 6. 의치, 보조기, 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마모되는 물품의 파손(가방, 가방 내 물품, 의류, 신발, 공구 등) 8. 분실 또는 망실 및 도난
<p>제2조 (보상하는 손해)</p>	<p>①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수익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p> <p>② 공제회가 지급하는 재물손해에 대한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 30일 이내 수리한 경우에 한합니다.</p>
<p>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p>	<p>①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p> <p>② 피공제자가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p> <p>③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등을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p> <p>④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와 현장학습 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p> <p>⑤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다만,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p> <p>⑥ 공제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공제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p> <p>⑦ 공제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⑨ 공제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⑩ 공제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은 경우
<p>제4조 (손해방지의무)</p>	<p>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p>
<p>제5조 (손해액의 조사결정)</p>	<p>공제회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공제의 목적의 가액(이하 '공제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p>
<p>제6조 (잔존물)</p>	<p>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공제의 목적의 잔존물은 공제회에 귀속됩니다. 다만 공제회가 그것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경우 피공제자에게 귀속합니다.</p>
<p>제7조 (대위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 한도 내에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합니다. ③ 공제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p>제8조 (준용규정)</p>	<p>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p>

[별표] 특정전염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코드
1. 콜레라	A00
2. 장티푸스	A01.0
3. 파라티푸스	A01.1~A01.4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A03.9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	A04.3
6. 페스트	A20
7. 파상풍	A33~A35
8. 디프테리아	A36
9. 백일해	A37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A80
11. 일본뇌염	A83.0
12. 홍역	B05
13. 풍진	B06
14. 볼거리	B26
15. 탄저병	A22
16. 브루셀라병	A23
17. 렙토스피라병	A27
18. 성홍열	A38
19. 수막알균 수막염	A39.0
2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A41.5
21. 재향군인병, 비페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A48.1~A48.2
22. 발진티푸스	A75
23. 광견병	A82
24.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A98.5
25. 말라리아	B50~B54

제9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